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고의 처리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접수 건에 대한 조사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신고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설정책국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9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건설현장준법감시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
- 전자우편 : mjkldh@korea.kr
- 팩스 : 044-201-55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 정보/입법 예고·행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전화 044-201-349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